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1.23.)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 □ 제안이유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민선 제8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확보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1) 정원의 총수: 1,743명 ⇒ 1,749명(증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06명 ⇒ 1,705명(감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 45명(증 7명)

2)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조 별표3)

○ 정원 총계 : 1,743명 ⇒ 1,749명(증 6명)

○ 일반직 계: 1,736명 ⇒ 1,742명(증 6명)

- 5급 : 75명 ⇒ 76명(증 1명)

- 6급 이하 : 1,651명 ⇒ 1,656명(증 5명)

나. 원활한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정원조정(안 제5조 별표 4)

○ (기존) 2023년 6월30일까지 → (변경) 2026년 6월30일까지

○ (기존) 6급이하: 5명 → (변경) 6급이하: 8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붙임 1)

다. 협의사항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0. 24.) 결과: 의견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 증 6명

- 의견제출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

###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 본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743명에서 1,749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6명에서 1,705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8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 검토 결과, 현 조례상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의 총수가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2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b>1,743명</b>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b>1,706명</b>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37명</b>	제2조(정원의 총수) ----- ----- ----- ----- <b>1,749</b> -----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b>1,705명</b>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45명</b>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b>1,704명</b>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45명</b>

- 안 제3조 별표 3은 구분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확보를 위해 5급 75명을 76명으로 변경하고 6급이하 1,651명을 1,656명으로 정원 총계는 1,743명에서 1,749명으로 개정하여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함
- 안 제5조 별표 4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관한 것으로 본격적인 청사건립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시한을 '2023년 6월30일까지' 에서 '2026년 6월30일까지' 로 연장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8조에는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민선8기 구청장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현 조례상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의 총수가 맞지 않아 조례에 맞게 수정함

###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호 중 “1,705명” 을 “1,704명” 으로 한다.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붙임 관련 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1,743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706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7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749명</u>----- -----.</p> <p>1. ----- <u>1,705명</u></p> <p>2. ----- <u>4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p> <p>1. ----- <u>1,704명</u></p> <p>2. -----</p>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348,942	354,874	360,907	367,042	373,282	1,805,047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348,942천원		
7 급	348,942천원	58,157천원 × 6명	7급 14호봉 기준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자체수입	348,942	354,874	360,907	367,042	373,282	1,805,047

6. 작 성 자 : 행정지원과 남명훈(☎ 2600-6034)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